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의2서식] <신설 2013.11.28>

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
시장 또는 상점가 개요	명칭		대표자 성명
	소재지		전화번호
	개설일(건축일)		소유형태
	규모	토지 면적: ㎡, 건물 연면적: ㎡, 영업장 면적: ㎡, 점포 수: 개	
	주요시설	건축물: 층 동, 층 동, 층 동 장옥(場屋): 동, 아케이드: 식	
	편의시설	화장실: 개, 주차장: ㎡, 기타:	

상인 조직	명칭	대표자 성명
	주소	전화번호
	설립일	회원 수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처리절차

신청인	처리기관 시 · 군 · 구 (문화관광형시장 담당 부서)
신청서 작성 ▶	접수
	▼
◀ 통보	문화관광형시장 요건 부합 여부 검토
	▼
	요건 부합 시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절차 수행